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100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157,322원과 그중 20,140,59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21,157,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57,3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8. 2. 26.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피고 A이 위 가항 기재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9. 4. 30.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15. D은행에 위 가항 기재 대출원리금 20,140,590원(원금 20,000,000원 + 이자 140,590원)을 변제하였다.

나. 증여 및 근저당권의 설정

- 1) 피고 A은 2019. 4.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4. 1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피고 B은 2019.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피고 B과 자매지간)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 1) 피고 A은 2019. 4. 10.경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당시 시가 73,518,000원)과 아산시 E

임야 12,046㎡ 중 2/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E 임야 지분에 관하여는 2014. 3.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F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A은 2019. 4. 10.경 소극재산으로 위 가의 1)항 기재 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G조합에 대한 19,000,000원의 대출금채무, H(주)에 대한 21,053,000원의 할부금채무, I(주)에 대한 1,890,000원의 신용대출채무, (주)J에 대한 22,500,000원의 대여금채무, 아산시에 대한 약 700,000원의 과태료채무 등 합계 약 85,14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부동산임의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20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14,45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 C은 2020. 8. 4.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61,375,080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조정

피고 B은 2019. 8.경 A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5. 위 이혼소송 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피고 A은 피고 B에게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합50462, 50235).[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0,140,59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7.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18. 2.경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9. 4. 30.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9. 10. 15. D은행에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산시 E 임야에 관한 지분은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C의 각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과 피고 B의 이혼소송절차에서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인데, 피고 A,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산분할의 결과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증여와 재산분할은 그 법률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 또는 법률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 B이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C은 실제로 피고 A, B에게 여러 차례 사업비용 등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정이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 C의 위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1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경매 진행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14,450,000원, 1순위 G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1,075,530원, 2순위 (주)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2,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에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70,874,470원(= 114,450,000원 - 21,075,530원 - 22,500,000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1,157,322원 중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1,157,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57,3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별 지 목 록

1. 충남 아산시 대 436㎡

2. 충남 아산시

(도로명주소) 아산시

위 지상

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35.33㎡

끝,

